#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84 발의연월일: 2020. 11. 16.

발 의 자:이탄희・이용빈・김성주

고용진 · 위성곤 · 맹성규

임호선 · 정일영 · 김용민

윤미향 · 최인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대학원생이 대학생들보다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여 재학 중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학원생도 대출 대상에 포함하여 재학 중 학자금 상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존재해왔음.

저소득층 등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계층의 대학원

진학 시 상환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사회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에게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도입 목적을 더 욱 폭넓게 달성 가능함.

한편,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학부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만큼 졸업기준, 대출한도 및 상환 관련 사항에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며, 대학원에서 '수료'하는 경우에도 '졸업'으로 간주토록 하는 '졸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서 장기미상환자 지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대학원생의 대출금액이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짐에 따라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적정 등록금 대출 한도를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대학원생의 대출연령(現 대학생 35세), 대출금액 및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출 면제 연령(現 대학생 65세)과 상환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자금 대출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에 따라 대출금액 증가로 장기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장 기미상환자 지정기준과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중지 요 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도도입 준비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와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하는 것임(안 제3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 법률 제 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를 "학생(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전문학사학위 과정·학사학위 과정·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마친 경우를 말한다"를 "마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자발적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를 말한다"를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과기간 별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고,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다."를 "하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③ 생활비 대출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65세"를 "65세(다만, 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으로한다)"로한다.

제18조제2항 중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한다)"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산 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상환하여 제3조제10호에 따른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재산 등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조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 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 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 는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 -----학생(외국인은 제외 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한다)으로 전문학사학위 과정 · 학사학위 과정 ·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을 말한다.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 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인 기 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10.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 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비율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 며, 구체적인 경과기간별 대 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 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를 말한다. 통령령으로 정한다.

11. ~13. (현행과 같음)

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11. ~13. (생 략)

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생 략)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는 등록금대출의 경우 한 도 없이 실소요액 전액으로 <u>하</u> 고,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는 교 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 ① (생 략)
- ②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 무는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 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 는 이를 면제한다.

③ (생 략)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제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 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현행과 같음)
②
<u>ठ</u> ो
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활비 대출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할
<u>수 있다.</u>
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u>65세(다만, 석사학</u>
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 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③ ~ ⑨ (생 략)

   제19조(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① ~ ⑤ (생 략)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u>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산 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u>

100분의 20에서 1
00분의 40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
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상
환율"이라 한다)
<u>.</u>
③ ~ ⑨ (현행과 같음)
]19조(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⑥
6
⑥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 비
⑥
⑥
(6)
⑥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